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아스팔트프라이머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아스팔트 프라이머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 방수방습공사의 하층도장, 방수시트접착제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자료없음
다. 제조자
1) 회사명 (주) 명신유화
2)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399-7번지
3) 긴급전화번호 043-877-2861
4) 담당부서 : 품질/환경/안전관리팀
라. 공급자 / 유통업자 정보
1) 회사명 (주) 쌍 곰
2) 주소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61
3) 긴급전화번호 031-768-3030 / 080-768-3030
4)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술연구소 조진오

위험 / 유해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액체(구분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구분2)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구분2A)
발암성 물질(구분1A)
생식독성 물질(구분1A)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구분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 위 험

유해·위험문구
고인화성액체 또는 증기.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암을 일으킬 수 있음.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독성이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열, 스파크, 화염, 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용기, 수용설비를 접지·접합시키시오.
폭발방지용 전기·환기, 조명.장비를 하시오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정전기 방지조치를 취하시오.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분진, 흄, 가스,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손발을 철저히 씻으시오.
사용 전 취급설명서를 확보하시오.
모든 안전 예방조치문구들을 읽고 이해가 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대응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화재를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하시오.
오염된 의복을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피부에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받으시오.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 주의를 받으시오.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 주의를 받으시오.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구하시오.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자료없음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물질명	이명(관용명)	CAS 번호	함유량(%)
산화된 아스팔트	아스팔트	64742-93-4	40-60
HDS Naphtha	나프타	64742-48-9	40-60

*구체적인 성분은 "영업비밀"임.
*조제에 관한 시험을 기초로 분류와 경고 표지가 이루어졌음.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화학물질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씻어 낸다.
즉시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즉시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제거한 후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 또는 다량의 물로 15분 이상 화학물질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씻어낸다.
오염된 옷 및 신발은 제거하고 세탁 후 재사용토록 할 것.
가려움, 쓰라림, 붉어짐등 외관에 변화가 보이거나 고통이 있을 때는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다. 흡입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옮길 것.
필요 시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즉시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라. 먹었을 때
많은 양의 용액을 섭취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 자료 없음
바.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소화제
입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 일반적인 포말
물이나 포말은 수분이 끓어 기포가 비산할 수도 있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탄소산화물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길 것.
불이 진화된 후 안정될 때까지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양 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
입 출하 또는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시간동안 무인호스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킬 것.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관계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이 되는 경우 즉시 대피할 것.
탱크, 철도차량 또는 트럭의 경우 대피반경 약 800m이상 떨어질 것.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제품이 토양이나 수원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유출이 큰 경우 추후의 폐기를 위해 유출지역보다 넓게 둔덕을 쌓아 둘 것.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폐기를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할 것.
나. 안전한 저장방법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해 저장 및 취급할 것.
혼합금지물질과 분리할 것.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u>산화아스팔트(Oxidized Asphalt); 아스팔트(석유) 흄</u>
산업안전보건법 :
ACGIH TWA : 5 mg/㎥(흡입가능한 부분)
NIOSH 권장 ceiling 15분 : 5 mg/㎥
<u>HDS Naphtha</u>
나프타 : OSHA - TWA : 300ppm, 1350mg/㎥ STEL : 400ppm, 1800mg/㎥
벤 젠 : 산업안전보건법 - TWA : 10ppm, 30mg/㎥ A2(발암성 추정물질)
톨루엔 : 산업안전보건법 - TWA : 100ppm, 375mg/㎥ STEL : 150ppm, 560mg/㎥
크실렌 : 산업안전보건법 - TWA : 100ppm, 435mg/㎥ STEL : 150ppm, 655mg/㎥
(n-)Pentane : 산업안전보건법 - TWA : 60ppm, 1800mg/㎥ STEL : 750ppm, 2250mg/㎥
(n-)HeXane : 산업안전보건법 - TWA : 50ppm, 180mg/㎥
(n-)Heptane : 산업안전보건법- TWA : 400ppm, 1600mg/㎥ STEL : 500ppm, 2000mg/㎥
(n-)Octane : 산업안전보건법 - TWA : 300ppm, 1450mg/㎥ STEL : 375ppm, 1800mg/㎥
(n-)Nonane : 산업안전보건법 - TWA : 200ppm, 1050mg/㎥
Methyl Cyclohexane : 산업안전보건법 - TWA : 400ppm, 1600mg/㎥
Ethyl Benzene : 산업안전보건법 - TWA :100ppm, 435mg/㎥ STEL : 125ppm, 545mg/㎥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작업장 전체 환기 및 국소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마크)을 필할 것.
다음 호흡용 보호구 및 최대사용 농도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및/또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작성한 것임.
모든 검지가능 농도 : 공기호흡기(압력 디맨드형, 전면형),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대피 :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전면형 및 미립자 여과제), 공기호흡기(대피용)

상기 자료는 당사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 및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에 따라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적용 시에는 기술연구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손 보호 :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신체 보호 :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갈색 또는 검정색의 점성이 있는 액체
나. 냄새 : 가솔린 또는 등유 비슷한 석유냄새
다. 냄새역치 : 자료 없음
라. PH : 자료 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자료 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 : 초기 끓는점 : 110℃이상
사. 인화점 : 0℃이상
아. 증발속도 : 자료 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 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 없음
카. 증기압(R.V.P)(@60℃) : 자료 없음
타. 용해도(물) : 무시할만한 정도
파. 증기밀도 : 자료 없음
하. 비중(@15℃) : 0.80-0.95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 자료 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 자료 없음
더. 분해온도 : 자료 없음
러. 점도 : 25-75 @25℃(SFS)
머. 분자량 : 자료 없음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상온, 상압에서 반응에 안정함
다. 피해야 할 조건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위험한 가스가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도 있음
라. 피해야 할 물질 : 할로겐, 가연성물질, 산화제
마.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열분해 시 유독성/ 자극성의 탄소화합물 연기 및 증기를 방출할 수 있음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 : 자료 없음
(경구) : 자료 없음
(눈, 피부) : 자료 없음

나. 단기 및 장기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급성독성 : HDS Naphtha
- 경구 : LD50〉 5,000mg/kg(쥐)
- 경피 : LD50〉 2,000mg/kg(토끼)
- 흡입 : LC50 자료 없음
피부 부식성/자극성 : 자료 없음
심한 눈 손상/자극성 : 자료 없음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발암성 :
인체에 대한 조사결과 불충분한 증거, 그룹 3(역청),
동물실험결과 충분한 증거, 그룹 2B(증기정제 및 공기 정제된 역청 추출물),
동물조사결과 제한된 증거(증기 정제되고 잔류물이 분해된 역청),
동물조사결과 불충분한 증거(공기 정제된 역청)
벤젠은 발암성 추정물질(A2)로 노출시간과 수준에 따라 암을 유발할 수 있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 없음
생식독성 : 자료 없음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흡인 유해성 : 자료 없음
다. 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독성 추정치 등) : 자료 없음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육생 생태독성 : 자료 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 없음
다. 생물 농축성 : 자료 없음
라. 토양 이동성 : 자료 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 자료 없음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정해진 처리시설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나. 폐기 시 주의 사항 : 폐기와 관련된 환경법규 준수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 없음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아스팔트
다. 운송에서 위험성 등급 : 3
라. 용기등급(해당되는 경우) : 3
마. 해양오염물질(해당/비해당) : 자료 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자료 없음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Benzene, Toluene, Xylene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 제4류1석유류

상기 자료는 당사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 및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에 따라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적용 시에는 기술연구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환경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 없음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S-OIL(주)
나. 최초작성 일자 : 1996년 2월
다.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
- 개정횟수 : 3회
- 최종개정일자 : 2017. 10. 25.

SSANGKOM

상기 자료는 당사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 및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에 따라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적용 시에는 기술연구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